

# 양 천 구

## 주 의 요 구

**제 목**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 및 포인트 사적 적립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 1. 업무개요

△△과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연도별 세출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서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는 세출예산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물품구매, 인쇄비, 소규모 수선비,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방역 수수료,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등 소규모 용역에 대한 역무대가) 임차료(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 급량비, 피복비, 위원회 참석수당, 심사수당 등
-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등 식사 제공 등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0조(인센티브의 처리)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카드사나 금융기관 외에 대형 할인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 주는 인센티브로서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무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 돕기 등 행정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심의회 관련 비용을 지출하면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는 다과 구입 비용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였고, 카드사용으로 발생한 적립포인트를 사적으로 적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 및 포인트 사적 적립 내역

연번	구매일자	건명	집행액(원)	부적정 내역
1	2023.2.21.	◆◆심의회 관련 다과 구입 비용 지출	109,880	- 사무관리비로 집행 (적정과목 시책업무추진비)
2	2024.2.20.	◆◆심의회 관련 다과 구입 비용 지출	23,300	- 사무관리비로 집행 (적정과목 시책업무추진비)
3	2025.2.28.	◆◆심의회 관련 다과 구입 비용 지출	154,830	- 사무관리비로 집행 (적정과목 업무추진비) - 사적 포인트 적립 (377원)

###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집행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